

소재·부품·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공고

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해외의존도 완화,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소재·부품·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6일

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

지원개요

□ 사업목적

-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·부품·장비분야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(R&D)을 지원하고자 함

□ 사업내용

사업명	•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
사업예산	• 총 120백만원 정도
사업내용	• 소부장 기업육성 R&D (60백만원 이내/건)
사업기간	• 2026. 5. 1 ~ 2026. 12. 31 (8개월 이내)
지원분야	•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기술 및 미래선도 기술 분야 [3. 지원분야 참조] *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자동차, 전기·전자, 기계·금속, 기초화학, 바이오, AI·S/W, 로봇, 미래차, 환경·에너지, 신소재, 우주, 방산, 수소 등
전담기관	• (재)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단 R&D지원팀

2

지원유형별 지원내용

구 분	소부장 기업육성 R&D
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GVC¹⁾ 재편 대응 기술국산화 분야 및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R&D 지원 • 도내 기업의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R&D 지원
작성 방법	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
지원금액 (과제당)	60,000천원 이내
지원기간	2026. 5. 1 ~ 2026. 12. 31 (8개월 이내)
신청자격	[4. 신청자격 및 5. 지원제외 대상 참조]
추진방식	기업단독
도비지원기준	총사업비의 80%이내
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단독 :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 기업부담(300만원 이상) ※ 민간부담금 : 지원금액의 25% 이내 예시) 지원금액이 60,000천원일 경우, 민간부담금은 60,000천원의 25%인 15,000천원
기술료 징수	총 도비지원금의 10%(주관기업)

※ 선정건수,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예정

추진방식별 도지원금비율	기업 단독 방식 : 주관(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 제외)를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)
-----------------	--

1) Global Value Chain(글로벌 공급망) : 제품생산 단계가 여러 국가에 나뉘어 이뤄지는 국가 간 분업 생산체계

3

지원 분야

□ 정부의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육성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기술 분야

No	구분	정의
1	반도체·디스플레이	• 불산 등 관련 핵심 소재 및 공정용 화학소재, 정밀 결합소재 및 장비 등
2	자동차	• 엔진 등 자동차 부품, 경량소재(차체, 부품) 등
3	전기전자	• 발전기, 배터리, 광학렌즈, 신소재 전자부품 등
4	기계·금속	• 금속가공장비, 초정밀 합금, 금속제조용 분말, 조선기계 등
5	기초화학	• 불화계 화학소재, 고정밀 접착소재 등
6	바이오	•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, 첨단바이오효약품 소재 등
7	AI·S/W	• 산업용 시스템SW, 지능부품 시스템SW 등
8	로봇	• 산업용·지능형 로봇 소재·부품·장비 등
9	미래차	• 전기,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소재·부품 등
10	환경·에너지	• 환경분야 측정기기, 신재생에너지 소재·부품 등
11	신소재	• 차세대 유망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
12	우주항공	• 우주 발사체, 로켓엔진 설계 및 제조 기술, 드론, 무인기 등 분야 등
13	방산	• 전장용 반도체 제조기술, 국방 다기능 기술 분야 등
14	수소	• 저온 수전해용 핵심소재 기술, 수전해용 전극 부품, 액체수소 분야 등

4

신청자격 ※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

□ 소부장 기업육성 R&D 신청 조건

○ 주관기관 :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(법인 및 개인사업자)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

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또는 총 매출액 대비 소부장 분야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인 기업

※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매출액 검토 확인서 필수 제출

② 도내 창업(기술)보육센터*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**을 하였거나, 사업장 소재 기업 (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)

* 중소기업진흥공단, 대학, 국공립·정부출연 연구기관,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·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

**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공장

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예정인 기업

※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,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, 미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

- 기업 단독 추진방식은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 제외)를 보유한 기업만 가능

□ 공통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)는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 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 - 이미 개발된 R&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,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

5

지원제외 대상

-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(2024년~2025년) 연속, 유동비율 50%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% 이상인 경우
(단,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)

[지원가능여부 예시]

구 분	유동비율		부채비율		지원여부
	2024년	2025년	2024년	2025년	
A기업	49%	47%	300%	400%	X
B기업	55%	60%	550%	650%	X
C기업	20%	75%	600%	320%	O
D기업	100%	40%	400%	540%	O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- 부도, 휴·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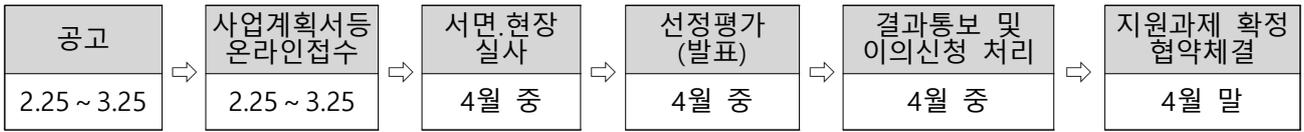
- 공고일 현재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
 -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- 최근 결산기준 참여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경우 (연구책임과제 3개, 연구개발과제 5개) 참여를 제한함(3책 5공 적용)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6

신청 및 접수방법

- **공고기간** : 2026. 2. 26.(목) ~ 2026. 3. 26.(목) 16:00까지
 - **접수기간** : 2026. 2. 26.(목) ~ 2026. 3. 26.(목) 16:00까지
- **접수방법** : 온라인 접수 (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)
 - 온라인 접수 : <http://rnd.jbtp.or.kr> (전북R&D종합정보시스템)
 - ※ 홈페이지 회원가입/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
 - ※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[전북테크노파크 R&D관리 홈페이지] 참조
 - ※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(전산 접수 가능용량 100MB)
- **관련문의** : 전북테크노파크 R&D지원팀 이진욱 주임연구원
(☎ 063-260-9335, e-mail : jinwook@jbtp.or.kr)

□ **평가절차 및 일정**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

□ **제출서류** (사업계획서, 제출서류 등 <http://rnd.jbtp.or.kr> 에서 다운로드)

No	제출서류	기업육성 R&D	비고
1	사업신청서 1부	○	주관
2	사업계획서 1부	○	주관
3	참여의사확인서 각1부	○	주관
4	민간부담금(현금.현물)출자 협약서	○	주관
5	최근 2년간('24~'25) 재무제표 각1부*	○	주관
6	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※ 공장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	○	주관
7	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** ※ 설립예정 기업은 추후 제출	○	주관
8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	○	주관
9	신규과제 자기진단서 각1부	○	주관
10	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	○	주관
11	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	○	주관
12	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1부*** 또는 매출액 검토 확인서 1부	○	주관

* 본사가 도외일 경우, 입주계약서,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** 소부장넷(<https://www.sobujang.net>)에서 신청 및 발급

7 (도비) 출연금 지원기준 등

□ 출연금은 기업 단독인 경우 총 사업비의 80% 이내로 하고,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% 이상을 원칙으로 함

※ (기업 단독 추진 - 예시) 도지원금 60,000천원(80%), 민간부담금 15,000천원(20%)인 경우, 민간부담 현금 15,000천원의 20%인 3,000천원 이상 매칭 필수

8

평가기준

□ 사업추진체계, 사업내용, 사업성과 등

검토항목	평가지표	세부내용
사업추진 체계 (30)	계획의 적절성	-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-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
	추진체계 및 연구역량	- 사전준비과정 적정성 - 주관기관 핵심기술 보유 여부 -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능력 및 역량
		기술개발 차별성
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(50)	기술개발 필요성	- 사업지원의 적합성 - 기술개발의 시급성 - 기술 국산화 가능성 -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과의 부합성 - 기술적, 사회적 필요성
	기술적 파급효과	- 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타당성 - 개발결과의 실용화·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- 사업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- 수입대체, 수출효과 등 파급 효과
		지역기여도
사업비 (10)	사업비편성	- 사업비 편성 적절성

9

추진절차



- 성과창출 : 과제당 기술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인증 1건 이상 필수
 - 지식재산권 : 특허 출원(등록), 실용신안(상표·저작권 제외)
 - 기타 : 신기술인증(NEP, NET), 국가공인인증,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확인서 등
- (공통)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30% 이상, 주관기업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(인건비)를 계상해야 함
- 선정된 주관기관 기업의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함
 - ※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지 연구노트 작성 확인예정
 - ※ 연구노트 미작성시 참여연구원 지원 인건비 전액 불인정
- 연구과제의 정량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
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성공”으로 판정될 경우, 성공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%를 납부
 - * 현금 일시납 원칙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2년간 분할납부 가능 (과제 성공판정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% 감면)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)는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 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 - 이미 개발된 R&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,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
- 주관기관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책임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제도를 폐지함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&D 사업 공동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지원근거
 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(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 -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·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육성지원 조례,
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·관리 규정

□ 주의사항

- 공공재정환수법 :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행정청이 이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,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,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.(2020.1.1. 시행)
-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(공공재정환수법 리플렛 참조)

※ 본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준수하오니 사업 신청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※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R&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